

근로기준법위반 범죄군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김연아

I.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개관

-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적용될 공정한 준칙 또는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의 자유·평등·인격권의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대등결정·균등대우, 강제근로·폭력·중간착취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함
- 최저임금의 보장, 임금체불 등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최근 속칭 ‘염전노예’ 사건의 발생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
-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근로기준법

적용법조		법정형
제107조	제7조(강제근로), 제8조(폭행), 제9조(중간착취), 제23조 제2항(휴업기간등해고금지), 제40조(취업방해금지)	5년 이하
제108조	근로감독관의 묵과	3년 이하
제109조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임금)	3년 이하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의 임금지급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5조(임산부 등 사용금지), 제72조(갱내사용금지)	
제110조	제1장 총칙 제10조(공민권행사)	2년 이하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1항(강제저금), 제26조(해고예고)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제1항(최저연령), 제69조(연소자의 근로시간), 제70조(임산부 등 야간, 휴일근로), 제71조(임산부 시간외근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5조(육아시간)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4조(감독기관에 신고)	
제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등 불이행	1년 이하

나. 그 외 특별법

- 퇴직급여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1조와 유사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바, 아래 ‘양형기준 설정범위’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함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근로기준법 제107조 관련

1) 강제근로, 폭행 ⇒ 포함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제8조(폭행),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1호,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폭행, 협박 등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	5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자에 대한 폭행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제7조와 유사)	7년↓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선원에게 근로 강요(제7조와 유사)	5년↓

-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폭력범죄와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상이하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중 법정형도 가장 높아 사회적 관심이 낮다고 볼 수 없음

2) 중간착취 ⇒ 포함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5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 취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선원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이익 취득	3년↓

- 제3자에 의한 임금 착취를 막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취지 및 구직난 등에 따른 높은 국민적 관심 고려

3) 휴업기간 중 해고 ⇒ 제외

- 제23조 제2항(휴업기간 중 해고)

-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1) 처벌사례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적정한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음

4) 취업방해금지 ⇒ 제외

- 제40조(취업방해금지)

-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나. 근로기준법 제108조 ⇒ 제외

- 제108조(근로감독관)

- 실제 처벌 사례가 없고, 구성요건의 성격도 이질적임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관련

1)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 포함

- 제3장(임금),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금품청산	3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판결문 검색결과,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 9건 발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44조의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퇴직금 미지급), 제2호	퇴직금 미지급), 제2호(퇴직연금 급여, 부담금 등 미지급) :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 미달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 2, 3호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2년↓

- 실제 처벌사례가 많지 않은 항목도 있으나, 그 항목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동일하므로 함께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함

2) 여성과 소년 ⇒ 제외

● 제5장(여성과 소년)

○ 제65조 (임산부 등 사용금지), 제72조 (갱내 사용금지)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3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72조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3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자를 근기법 제65조에 정한 사업에 소개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3년↓
파견법 제42조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5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4호, 제91조 제4, 5, 6항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사용, 임신 중인 여성을 선내 작업에 사용, 산후 1년 미만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 및 해로운 작업에 사용	3년↓

- 실제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 없음
- 18세 미만자를 유해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또는 아청법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보임 L

라.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외

● 제1장(총칙), 제2장(근로계약)

- 제10조(공민권행사), 제22조 제1항(강제저금)
-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여성과 소년)

-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 제1, 2, 3항(연장근로 제한)
-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9조(근로시간)
- 제60조 제1, 2, 4, 5항(연차유급휴가)
- 제70조 제1,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제71조(시간외근로)
- 제64조 제1항(최저연령),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5조(육아시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 제8장(재해보상)

● 제11장(근로감독관 등)

- 실제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 없음

마. 근로기준법 제111조(확정된 규제명령 불이행) ⇒ 제외

- 행정법규에 가깝고, 실제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Ⅲ.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유형분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근로기준법위반 범죄군

가. 대유형 분류

- 양형기준 설정대상이 크게 제107조와 제109조 위반으로 대별되어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함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범죄들은 그 세부 항목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법정형도 대부분 같으므로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함

나. 중소유형 분류

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 내 소유형 분류

- ‘강제근로·근로자폭행’과 ‘중간착취’ 사이에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자료를 통한 평균형량이나 형량분포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법정형이 대체로 징역 5년 이하로서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함

2) '임금 등 미지급' 유형 내 소유형 분류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을, ① 피해자 수에 따라 '일반적 미지급'과 '다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으로 분류하는 방안, ② 미지급 금액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②안으로 결정
- 대상 범죄들은 모두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이득범죄와 유사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사기, 횡령·배임범죄 등 대부분의 이득범죄에서 금액에 따라 소유형을 분류함
- 미지급 금액에 따른 형량분포 검토결과 5,000만 원 미만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으로 분류

■ 선고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수	155	890	1,045
	비율	14.8	85.2	100.0

■ 징역형의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8	24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수	7	20	314	25	434	4	135	1	52	44	8	1	1,045	6.12
	비율	0.7	1.9	30.0	2.4	41.5	0.4	12.9	0.1	5.0	4.2	0.8	0.1	100	

■ 미지급 금액에 따른 형량 분포

형량(월) 금액(만원)	2	3	4	5	6	7	8	9	10	12	18	24	계	평균 형량
2,000 미만	3 4.6	2 3.1	43 66.2		14 21.5		2 3.1		1 1.5				65	4.5
2,000~3,000	1 1.4	5 7.1	39 55.7	3 4.3	21 30.0		1 1.4						70	4.6
3,000~4,000	3 4.4	2 2.9	42 61.8	2 2.9	19 27.9								68	4.4
4,000~5,000		5 5.4	51 54.8	2 2.2	33 35.5		2 2.2						93	4.7
5,000~6,000		2 1.7	48 40.0	10 8.3	52 43.3		5 4.2		3 2.5				120	5.2
6,000~7,000		2 2.2	29 31.2	1 1.1	51 54.8		6 6.5		4 4.3				93	5.6
7,000~8,000		1 1.4	20 28.2	2 2.8	35 49.3		9 12.7		3 4.2	1 1.4			71	5.9
8,000~9,000			13 16.7	1 1.3	54 69.2		9 11.5		1 1.3				78	5.9
9,000~10,000			6 12.2	1 2.0	23 46.9	4 8.2	11 22.4		3 6.1	1 2.0			49	6.6
10,000~ 20,000		1 0.4	23 10.2	2 0.9	107 47.3		63 27.9	1 0.4	16 7.1	12 5.3	1 0.4		226	7
20,000~ 30,000		1 1.9	5 9.6	1 1.9	17 32.7		12 23.1		11 21.2	5 9.6			52	7.6
30,000~ 40,000			1 4.0		8 32.0		4 16.0		5 20.0	7 28.0			25	8.7
40,000~ 50,000					2 16.7		2 16.7		1 8.3	5 41.7	2 16.7		12	11.1
50,000 이상							4 16.7		3 12.5	12 50.0	4 16.7	1 4.2	24	12.6
계	7	21	320	25	436	4	130	1	51	43	7	1		

3. 유형분류안

01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02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원 미만			
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	1억원 이상			

IV. 형량범위 검토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형량분포 통계를 참조하여 가급적 다수의 사례가 형량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되, 죄질이 중한 유형 등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2. 구체적 검토

가. 강제근로·중간착취

1) 형량분포

- ‘강제근로·근로자폭행’ 유형의 경우 단일범으로 처벌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경합범으로 처벌된 소수의 사례에서도 주로 경합

범인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에 의하여 형량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실무 통계자료를 참고하기 어려움

- '중간착취' 유형의 경우에도 양형자료 조사대상 사건이 6건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통계자료로 보기 곤란함

단위: 명, %, 월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8	24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수	0	0	0	0	1	0	4	0	0	1	0	6	9.33
	비율	0.0	0.0	0.0	0.0	16.7	0.0	66.7	0.0	0.0	16.7	0.0	100.0	

2) 유사 범죄 양형기준 참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존속폭행 5년↓ 운전자폭행 5년↓ 폭행 2년↓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존속협박 5년↓ 운전자협박 5년↓ 협박 3년↓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존속학대 5년↓ 유기 3년↓ 영아유기·학대 2년↓ 존속유기 10년↓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체포감금 5년↓ 중체포감금 7년↓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강요 5년↓ 피해자에 대한 강요(청소년성 보호법·아동학대범죄처벌법) 7년↓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직무강요 5년↓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아동복지법 아동유기·학대 5년↓ 노인유기·학대 7년↓, 5년↓ 청소년학대 5년↓ 중유기 7년↓ 중존속유기 2년↑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업무방해 5년↓

3) 검토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근로자폭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 일반강요의 권고 형량범위 주로 참조

- '강제근로'의 경우 '일반강요'와 법정형(5년↓, 7년↓) 및 강요라는 구성요건 측면에서 동일성이 존재하고 보호법익도 유사한 점을 고려함
- 중간착취의 경우 선고된 사례 중 가장 높게 선고된 형이 징역 1년 6월이나 착취 금액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큰 사건도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6월로 설정

나. 임금 등 미지급

1) 형량분포

▣ 전체 형량분포

단위: 명, %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8	24		
수	7	21	314	25	434	4	135	1	52	44	8	1	1,046	6.12
비율	0.7	1.9	30.0	2.4	41.5	0.4	12.9	0.1	5.0	4.2	0.8	0.1	100	

▣ 미지급 임금액별 형량 분포

형량(월) 금액(만원)		2	3	4	5	6	7	8	9	10	12	18	24	계	평균 형량
		5,000 미만	수	9	9	166	7	87	0	2	0	2	0	0	
	비율	3.2	3.2	58.8	2.4	30.8	0.0	0.7	0.0	0.7	0.0	0.0	0.0	100	
5,000~10,000	수	2	6	112	14	206	3	40	0	10	1	0	0	394	5.66
	비율	0.5	1.5	28.4	3.6	52.3	0.8	10.2	0.0	2.5	0.3	0.0	0.0	100	
10,000 이상	수	0	3	33	5	130	0	87	0	46	38	7	1	350	7.66
	비율	0.0	0.8	9.4	1.4	37.1	0.0	24.8	0.0	13.1	10.8	2.0	0.3	100	

2) 검토안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3년 ↓, 2년 ↓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2월 - 2년6월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 8월

- 평균형량 징역 4.61월, 징역 4월이 58.8%로 가장 많은 분포
- 징역 4월이 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제2유형과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4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92.7%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6월 - 1년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및 제2유형 기본영역과의 균형을 고려
- 소수의견의 경우 가중영역에 1.4%만 포섭되는 문제 있음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 평균형량 징역 5.66월, 징역 6월이 52.3%, 징역 4월이 28.4%로 그 다음을 차지
- 52.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징역 6월을 기본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은 5.66월에 불과하나 금액 차이에 따른 가벌성을 반영하여 다소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한을 6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66.5% 포섭

- 감경영역 : - 8월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제3유형 1억 원이상

-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 평균형량 징역 7.66월, 징역 6월이 37.1%, 징역 8월이 24.8%로 그 다음을 차지
- 평균형량은 7.66월에 불과하고, 징역 6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금액 차이에 따른 가벌성을 반영하여 다소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한을 8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50.7% 포섭
- 감경영역 : 6월 - 1년
- 가중영역 : 1년2월 - 2년6월

3.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01 강제근로 · 중간착취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 · 근로자폭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02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2월 - 2년6월

V. 양형인자

1. 강제근로·중간착취 양형인자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특별감경인자(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부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 반영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공무집행방해,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강요,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양형기준 등에서도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정도가 가벼운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금품의 액수에 따라 유형분류를 하지 않는 대신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임금,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수수한 금품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15개 범죄군 양형 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야 인정되는 점에서 '상당 금액 공탁'과 구별되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이나 피해회복의 정도 면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와 별다른 차이 없음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특별가중인자(행위)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참조
- 고용관계라는 종속적인 지위에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성범죄, 폭력, 선거,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강요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삼고 있음
- 중간착취의 경우 채용 청탁 명목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있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학대하는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범행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국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마.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바. 일반감경인자(행위)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강제근로의 경우 폭력범죄와, 중간착취의 경우 사기범죄와 범행 경위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폭력,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하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감

경인자로 반영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 알선으로 취업, 모집, 채용을 하려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아. 일반가중인자(행위)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범행 방법 등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있음
 - 정의규정
 -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행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를 강요한 경우
 - 취업, 근로자 모집, 채용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가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자.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차.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상당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2. 임금 등 미지급 양형인자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특별감경인자(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사용자에게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

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는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양형인자이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특별가중인자(행위)

- 악의적인 미지급

- 사용자의 임금 지급거절에 악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무에서도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되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참조
-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상당한 채무 부담,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반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과 동일

마.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바. 일반감경인자(행위)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 사용자의 지위에 다툼이 있거나 임금의 범위, 액수에 다툼이 있어 사용자가 이러한 다툼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근로자, 사용자의 지위, 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법적 소양을 요하므로, 미필적 고의에 준하여 일반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사.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아.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자. 임금 등 미지급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